

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

소비자 안전을 위한

주의사항 표시방법

가이드 라인

희망의 새시대를

안전한 먹을거리, 국민행복



식품의약품안전처
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

1. 주의문구 규정 및 표시방법 3

2. 식품등의 대상별 주의문구 표시내용 4

[식품 표시대상] 4

- ① 육류 등 냉동식품
- ②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
- ③ 과일·채소류음료,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·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
- ④ 음주전후, 숙취해소 등의 표시 제품
- ⑤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
- ⑥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
- ⑦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
- ⑧ 특수의료용도등 식품
- ⑨ 컵모양 등 젤리 제품
- ⑩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한 식품과 교차오염이 가능한 제품
- ⑪ 카페인 함량을 ml 당 0.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
- ⑫ 선도유지제
- ⑬ 모든 식품

[식품첨가물 표시대상] 16

- ① 수산화암모늄, 초산, 빙초산, 염산, 황산, 수산화나트륨, 수산화칼륨, 차아염소산나트륨, 표백분 등

[기구 또는 용기·포장 표시대상] 17

- ① 식품포장용 랩
- ② 폴리스티렌, 멜라민수지,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·포장
- ③ 유리제 기구

주의문구 규정 및 표시방법



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는
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

▶ 주의문구 표시기준

- ◎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·포장에 표시
- ◎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·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
- ◎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
- ◎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

▶ 주의문구 권장 표시방법

- ◎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**붉은색**으로 표시
- ◎ **테두리 사용** 또는 **바탕색과 구분되는 면**으로 표시



| 주의문구 권장표시 예시 |



식품등의 대상별 주의문구 표시내용

식품 표시대상

① 육류 등 냉동식품

주의문구

"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
마시길 바랍니다 "



참고
사항

〈식품등의 표시기준 「별지 1」 2. 다. 냉동식품 표시사항〉
(6포인트 이상 표시)

- ✓ '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' 또는 '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'으로 구분 표시
- ✓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'살균제품'으로 표시
- ✓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을 첨가한 냉동제품은 '호모 또는 유산균수' 표시
- ✓ 냉동식품은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 표시
- ✓ 조리 또는 가열처리가 필요한 냉동식품은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 표시

▶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, 떡류, 젓갈류 및 초콜릿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경우

주의
사항

"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
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"



참고
사항

〈식품등의 표시기준 제8조〉 바. 적용특례
(주표시면 10포인트 이상 표시)

제조업체가 빵류, 떡류, 젓갈류, 초콜릿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스티커, 라벨,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음

- ✓ 제조연월일
- ✓ 해동연월일
- ✓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- ✓ 해동 후 보관방법
- ✓ 해동 후 주의사항

②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

주의
사항

"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, 보관 및 폐기 시
주의하십시오 "



참고
사항

〈식품등의 표시기준 「별지 1」 2. 가. 통·병조림 표시사항〉
(6포인트 이상)

- ✓ 통·병조림의 내용물은 고품량 및 내용량으로 구분 표시하고,
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
※ 통·병조림식품은 통 또는 병에 넣어 탈기와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한
것을 말함
- ✓ 산성통조림은 "산성통조림"으로 표시
※ 산성통조림은 pH4.6 이하인 통조림을 말함

③ 과일·채소류음료,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·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

주의
사항

"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"



④ 음주전후, 숙취해소 등의 표시 제품

주의
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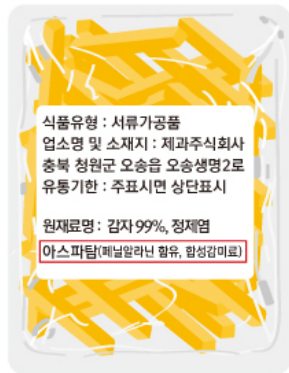
"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"



⑤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

주의
문구

"페닐알라닌 함유"



참고
사항

✓ 아스파탐은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라긴산으로 구성되어 일일 페닐알라닌 섭취를 제한하여야하는 페닐케톤뇨증 환자를 위해 주의문구 표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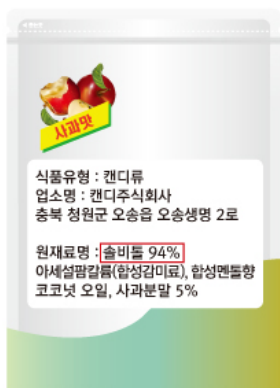
※ 페닐케톤뇨증 :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 결핍으로 페닐알라닌이 체내 축적되어 경련 및 지능장애,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유전대사질환임

✓ 아스파탐은 식품첨가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 첨가물이므로 '합성감미료'를 표시해야함

⑥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

주의
문구

" 과량 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"
"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"



참고
사항

- ✓ 당알코올 종류 : 솔비톨(Sorbitol), 말티톨(Maltitol),
자일리톨(Xylitol), 에리스리톨(Erythritol),
아라비톨(Arabitol), 리비톨(Ribitol),
갈락티톨(Galactitol), 락티톨(Lactitol),
만니톨(Mannitol) 등

⑦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

주의
문구

"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"
"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"



참고
사항

〈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〉

✓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·가공한 제품

※ 선천성대사질환 : 유전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에 결함이 있어 물질대사효소의 불능 또는 물질의 이송결함 등으로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질환

예시) 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, 단풍당뇨증 등

⑧ 특수의료용도등 식품

주의
문구

"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"



참고
사항

특수의료용도등 식품

- ✓ 환자용 균형영양식
- ✓ 당뇨환자용식품
- ✓ 신장질환자용식품
- ✓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
- ✓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
- ✓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식품
- ✓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
- ✓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



⑨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 제품 (컵모양 등 젤리 제품)

주의
사항

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 방지 경고문구 표시

(예시) " 열려서 드시지 마십시오.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.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"



참고
사항

〈「식품의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컵모양 등 젤리 제조기준〉

- ✓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.5cm 이상 이어야 하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 내경은 3.5cm 이상 되도록 제조

〈「식품의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컵모양 등 젤리 원료기준〉

- ✓ 컵 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는 곤약, 글루코만난을 겔화제로 사용할 수 없음

⑩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한 식품과 교차오염이 가능한 제품

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. 다만, 세척·소독 등을 통해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알레르기 유발 성분

" 이 제품은 OO(알레르기 유발성분)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"



참고 사항

알레르기 유발성분 (13가지)

- ✓ 난류(가금류에 한함)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(최종제품에 SO₂로 10mg/kg 이상 함유한 경우)

② 카페인 함량을 ml 당 0.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

주의
문구

"어린이, 임산부,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"

주표시면에 "고카페인 함유" 와 "총카페인 함량 00mg" 표시



⑫ 선도유지제

주의
문구

습기방지제(방습제), 습기제거제(제습제) 등 용도 표시
" 먹어서는 아니된다 " 등의 주의문구



⑬ 모든 식품

주의
문구

" 부정 ·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"



식품첨가물 표시대상

① 수산화암모늄, 초산, 빙초산, 염산, 황산, 수산화나트륨, 수산화칼륨, 차아염소산나트륨, 표백분 등

주의사항

"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"

"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"

" 눈 · 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. " 등의 취급상 주의사항



기구 또는 용기 · 포장 표시대상

① 식품포장용 랩

주의
문구

" 100℃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 "
"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 "



참고
사항
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「별지1」 다. 1) 나)

- ✓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주원료 명칭 및 가소제, 안정제,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폴리스티렌, 멜라민수지,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 · 포장

안전
확인

" 식품가열 · 조리시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"



③ 유리제 기구

▶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

유의
사항

"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"



▶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

유의
사항

" 가열 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"



참고
사항

가열조리용 유리제 종류

- ✓ 직화용 (400℃ 이상, 150℃ 이상), 오븐용(120℃ 이상)
전자레인지용 (120℃ 이상), 열탕용 (120℃ 이상)
- ※ 「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 참조



소비자 안전을 위한
주의사항 표시방법
가이드 라인

이 자료는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참고자료입니다.
관련 규정은 『식품등의 표시기준』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작성일 : 2014년 7월 10일)

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

(363-700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

www.mfds.go.kr